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4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양문석·정태호·김현정

민형배 · 진성준 · 오세희

김문수 · 김원이 · 이기헌

이광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,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.

그런데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 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1항 중 "알게 된 때"를 "알게 된 경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알게 된 경우"를 "알게 된 경우나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	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
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	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	①
애인 대상 성범죄를 <u>알게 된</u>	<u>알게 된</u>
<u>때</u> 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	경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
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	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
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(이하	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"장애인권익옹호기관"이라 한	
다)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	
있다.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	
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	
죄를 <u>알게 된 경우</u> 에는 지체	알게 된 경우나 장애인학
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	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
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	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
	<u>는 경우</u>
1. ~ 22. (생 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